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4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송갑석·인재근·민형배

김원이 · 박 정 · 김경만

전용기 · 이용빈 · 이용선

정춘숙 · 이형석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한 채 무인비행장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동형 영상정보처 리기기와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법의 규정 사항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라 한다)는"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개인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각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유영하는 자"로 한다.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 알림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실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2.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제72조제1호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6호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사실의 표시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u>일정</u>	7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	<u>각 목의</u>	
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		
<u>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u>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를 말한다.		
<u><신 설></u>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	
	<u>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u>	
	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u><신 설></u>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	
	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	
	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경우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개된 장소에 <u>영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u>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 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u>영상정</u>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
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치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고정형</u>
영상정보처리기기
<u>4</u> <u>ग</u>
<u>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u>
<u>치·운영하는 자는</u>

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 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 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 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u>영상정보처</u>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1. ~ 4. (현행과 같음)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
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
빛, 알림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실
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
<u>고정형 영상정</u>
보처리기기를
⑦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인

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이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생략)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 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

 <u>⑧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u> <u>운영하는 자</u>
 <u>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u> <u>운영하는 자</u>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현 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니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 음기능을 사용한 자

2. • 3. (생략)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1. -----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	· 당정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	

- 2.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③·④ (현행과 같음)

세72소(별식)	

- 1. <u>제25조제5항</u>을 위반하여 <u>영</u> 1. <u>제25조제6항-----고</u>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u>고정형 영상</u>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정보처리기기-----
 - 2. 3. (현행과 같음)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 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 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3.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u>제25조제6항</u>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영</u>
 <u>상정보처리기기</u>를 설치·운영
 한 자

7의2. ~ 1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u><신 설></u>

4. ~ 11. (생략)

제25조제7항
2.·3.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5조제7항</u>
7
·· <u>– ~ ~ ~ ~ ~ ~ ~ ~ ~ ~ ~ ~ ~ ~ ~ ~ ~ ~ </u>
7의2. ~ 13.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사실의 표시 등 필
<u>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4. ~ 11. (현행과 같음)
4. TE U E U /